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문서번호 슈로더 11-118 (박경순 3783 0508)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투자신탁상품 관련부서장  
 제목 투자신탁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통보

2011. 4. 2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가 운영하는 주요 펀드에 대한 신탁계약서와 투자설명서 변경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투자설명서의 변경은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른 수시공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주요 변경 내역: 선취판매수수료 적용문구 변경

정 정 전	정 정 후
종류 A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u>1.2%</u>	종류 A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u>1.2% 이내</u>

4. 변경시행일: 2011년 4월 29일

첨 부: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주요변경내용 1부. 끝.

수신처: 대구은행, 대우증권, 동부증권, 동양증권, 메릴린치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외환은행,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 하나은행, 하이투자증권, 한국씨티은행, 한국투자증권, HSBC 은행, PCA 생명, SC 제일은행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전길수(인)



##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혼합)

### 1. 신탁계약서 주요 변경 내용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 40 조 판매수수료	<p>②종류 A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는 신탁재산으로 구성되지 아니한다.</p>	<p>②종류 A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이는 신탁재산으로 구성되지 아니한다.</p> <p>1. 종류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0 분의 12 이내</p>

### 2. 증권신고서 주요 변경 내용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p><u>종류 A 수익증권</u>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2%</p>	<p><u>종류 A 수익증권</u>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2% 이내</p>